

Q & A

〈Q〉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폐지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원자력법 제100조에 취하여야 할 조치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먼저,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른 원자력관계 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폐기하여야 함.
 2.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은 제거하여야 함.
 3.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폐기업자에게 양도하거나 폐기하여야 함
 4. 총리령이 정하는 기록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인도하여야 함.

여기에서 우리협회와 관련된 부분은 “4”번으로 협회가 과학기술처로부터 기록인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하여야 할 기록 종류입니다.

1.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기록
2.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측정기록
3.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

그러나, 인허가 종류에 따라 인도하여야 하는 항목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위의 조치사항이 완료되면 조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사용폐지등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처리 업무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은 협회에 기록인도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폐지신고를 하므로서 기록인도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협회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5, 6, 7, 8, 9월의 협회 교육 일정표

내 용	일 정	시 간	장 소
작업종사자(경남)	5. 8~5. 9	09:30~16:50	부산대학교 본관 2층 세미나실(부산)
작업종사자(경북)	5. 22~5. 23	"	경북대학교 (대구)
작업종사자(중부)	5. 27~5. 28	09:30~16:50	한국과학재단 대회의실(대전)
RI일반면허실무교육 (1기)	6. 9~6. 10	09:30~17:50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2기)	6. 18~6. 19	"	"
(3기)	6. 25~6. 26	"	"
(4기)	7. 2~7. 3	"	"
작업종사자(수도권)	7. 10~7. 11	09:30~16:5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강당(서울)
작업종사자(중부)	7. 29~7. 30	"	한국과학재단 대회의실(대전)
작업종사자(호남)	9. 24~9. 25	"	조선대학교 공대2호관 (광주)
신규 작업종사자(전국)	9. 3~9. 5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강당(서울)